

법률고문 등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13. 9. 27.

개정 2014. 3. 4.

개정 2015. 4. 6.

개정 2015. 8.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송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법률고문등의 선정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법률고문등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률고문이라 함은 제4조의 업무를 위하여 공사와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소송수행 변호사라 함은 제4조의 업무를 위하여 공사와 소송 등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를 말한다.
3. “법률고문 등”이라 함은 제1호 법률고문 및 제2호 소송수행변호사를 말한다.

제4조(법률고문 등의 직무) 법률고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소송사건등의 수행에 응한다.

1.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업무 관련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제5조(법률고문등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중에서 내·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 중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사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의 공개모집 방법·절차·인원 등은 사장의 방침을 받아 정한다.

③ 법률고문의 정원은 30명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의 방침을 받아 증감할 수 있다.

④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송무담당부서장은 법률고문 위촉시와 소송사건등의 대리 변호사 선임시에는 「변호사법」 98조5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처분내역을 조회하거나 해당 변호사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야 하며 해당 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등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변호사 징계처분 집행규정」에 따라 정직 6개월이상 정직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평가 결과 점수가 낮아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법률고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

3. 법률자문 및 소송관련 정보를 유출한 경우

4.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5. 공사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등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6. 법률고문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7. 범죄행위로 형의 확정,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제6조의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⑦ 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송무담당부서장은 법률고문 위촉시 법률고문별 전문분야를 확인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위임시 활용하도록 한다.

제6조(신고 및 허가) 법률고문등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 후 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법률자문을 하게 된 경우
2.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등에서 자문·고문·임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3. 법률고문등의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7조(소송대리인) ①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이 경우 일부 법률고문에게 소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송무담당부서장은 법률고문 1인에 대한 소송 위임율·보수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지식, 소송수행능력, 사건의 성격·내용·중요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등을 고려시 필요한 경우 법률고문이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복수의 공사 법률고문·법률고문의 변호사로부터 제1호 서식 수임제안서를 제출 받아 당해 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수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판결결과가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소가·사건의 특수성·전문성·난이도등 고려시 필요한 경우
3. 기타 복수의 수임제안서 평가로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법무법인이 소송수행을 할 경우 제5조 ④항에 따라 법무법인 소속 징계전력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 ⑤ 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 소송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⑥ 소송대리인 선임시 선임기준에 대하여는 소송의 성격·규모·관할법원, 법률고문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송무담당부서장이 정한다. <신설 2014. 3. 4.>

제8조(법률질의) ① 주무부서장은 소송업무규정 제6조에 따라 법률고문 및 법률고문의 변호사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② 송무담당부서장은 일부 법률고문에게 질의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③ 법률고문에 대한 법률자문료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송무담당부서장이 그 기준을 정하며 법률고문의 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료는 주무부서장이 소관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변호사와 협의후 정할 수 있다.
- ④ 주무부서장은 법률고문외의 변호사에게 법률질의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질의 내용,대상 변호사 선정등에 주의 한다.

제9조(청렴서약) 법률고문을 위촉 또는 소송사건 등을 변호사등에게 위임하는 경우 부패·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변호사 등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평가) ① 주무부서장은 법률질의에 대해 매분기 말에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하여 송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률고문등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소송사건의 심급별 소송수행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하여 송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송무담당부서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법률질의 의뢰, 법률고문 재위촉 또는 소송사건 등의 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 송무담당부서장은 법률고문 등의 위촉, 소송 현황 등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한다.

부 칙<2013. 9.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도 신규로 위촉하는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위촉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공사의 소송을 수임중인 법률고문은 소송수행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부 칙<2014. 3. 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서식]

소송대리 수임 제안서

본 법무법인은 00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 수임을 제안 합니다.

1. 법무법인의 소개

2. 소송수행 계획

- 가. 사건의 개요
- 나. 이 사건의 쟁점
- 다. 대응방안

3. 승소가능성

4. 업무범위 및 소송비용

- 가. 업무범위
- 나. 소송비용

- (1) 착수금 : 1심착수금은 금 0백만원(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 (2) 성공보수금 : 1심 전부 승소시 금 0백만원(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일부 승소시 금 0백만원을 기준으로 승소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5. 담당변호사 소개

- 전문분야
- 학력 및 경력
- 유사 소송수행 경험 등

6. 기타 참고사항 (소송수행사례 등)

